

제273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 
제 3차 본회의, 2021.12.08(수)10:00

고령군 건축물관리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전 문 위 원

# 「고령군 건축물관리 조례안」 검토보고

## 1. 제안자 : 고령군수

## 2. 제안이유

- 「건축물관리법」이 제정 및 시행(2020. 5. 1.)됨에 따라, 관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, 편리·쾌적·미관·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·향상시키기 위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나.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다.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라.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마.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## 4. 관계법령 : 「건축물관리법」, 「건축법」

## 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,

- 「건축물관리법」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·향상시키고 건축물을 안전하게 해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.

○ 검토결과,

- 안 제4조, 안 제5조 등에 명시된 군수의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구제적 지정과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의 대상의 범위와 안 제7조의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, 안 제9조, 안 제10조의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및 해체공사감리자의 사항에 대한 규정은 『건축물 관리법』 및 『건축법』 등 상위법령에 위배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.
-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